충남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: 2013.01.01.

1차 개정 : 2013.03.22.

2차 개정 : 2014.11.04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선박해양공학과(이하 "학과"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**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/박사 과 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등재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학생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된 논문만 인정한다.
 - 2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4조(필수 수강과목) ①석사학위과정은 "아래에 지정한 기초공통과목" 3개를 수강하여야 한다.
 - 1. 고체역학특론1
 - 2. 유체역학특론1
 - 3. 응용수학특론1
- ②타 학과에서 위와 유사한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,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.
- 제5조(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,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) ①학위청구논문(이하 "논문"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 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.
 -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,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, 박사학 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 - ③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

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- 제7조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①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.
 - ②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8조(합격기준) 전공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- 제9조(보고) 학과장은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TOEIC 600점 이상
 - 2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 -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 - ③상기 조건 이외의 영어성적을 제출한 경우는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11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 -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 -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 (개정 2014.11.4)
- 제12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3.03.2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11.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선박해양공학과장 안 병 권 (인)

[서식 1]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의 요청서

전 공:

학 번:

성 명:

영어성적 :

사 유:

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(외국어능력 기준) 1항 및 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, 3항에 의거 학과 교수회의에서 그 사유를 심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기를 요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: 지도교수 (인)

선박해양공학과장 귀하

[서식 2]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 승인서

전 공:

학 번:

성 명:

영어성적 :

사 유:

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(외국어능력 기준) 1항 및 2항의 외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나 학과 교수회의에서 그 사유를 심의한 결과 기준에 상응하는 외국어 능력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승인합니다.

20 . . .

선박해양공학과장 (인)